허준영 청장 중도 사퇴

-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의 轉機되기를 -

시위농민 사망에 따른 사퇴압력을 받아오던 허준영(52) 경찰청장이 취임 11개월만인 지난 12월 29일 사표를 제출했다.

허 청장은 발표문을 통해 『연말까지 예산안 처리 등 급박한 정치현안을 고려, 평소 국가경영에 동참하는 치안을 주창했던 저로서는 통치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청장이 물러날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에는 변함없다』고 소신을 유지했다.

또한 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해 허 청장은 『경찰과 검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영 시스템상 견제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성역을 없애자는 것이므로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국민의 고막을 찢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준영 경찰청장이 퇴임식을 마치고 경찰청사를 떠나고 있다.

특히 허 청장은 『평화적 집회시위 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에 있어 경찰의 장비 보강이나 관련법규의 강화는 오히려 과격시위를 부추길 수 있으며, 거국적으로 뜻을 모아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꼭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청장은 『성난 농민들의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불상사지만 결과적으로 농민 두분이 돌아가신 데 대해 비통하게 생각하며 병상에 있는 전·의경, 농민의 쾌유를 빈다』고 덧붙였다.

외무고시 출신 1호로 1984년 경찰에 입문한 허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을 역임한뒤 올해 1월 경찰인사와 관련해 사표를 낸 최기문 전 경찰청장의 후임으로 경찰총수 자리에 올랐다. 이번 허 청장의 사퇴로 2003년 12월 도입된 경찰청장 임기제는 최기문 전 청장에 이어 연달아 지켜지지 않는 셈이 되었다.

한편 허 청장 사퇴 이틀전인 지난 12월 27일은 이기묵 서울경찰청장도 『이번 시위대응을 맡은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표를 제출함으로서 이번 농민사태와 관련 경찰 최고의 책임자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동시에 물러나야만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次期 청장, 이택순 경기청장 내정

次期 경찰청장에 이택순(李宅淳.54) 경기경찰청장이 내정되었다.

청와대는 지난 4일 오후 인사추천회의와 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 이 청장을 지명한 뒤 경찰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밟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청장 발탁 배경에 대해 『중앙과 지방의 일선 지휘관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하여 치안행정 전반에 걸친 경륜과 식견이 풍부하고 조직관리 및 상황대처 능력이 탁월하다』고 밝혔다.

행시 18회 출신의 이 청장은 서울 출신으로 용산고와 서울대 지리학과를 졸업했으며 종로경찰서장, 서울경찰청 형사과장, 경찰청 정보3과장, 경찰청 인사과장, 경남경찰청장을 거쳐 참여정부 들어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지냈다.

이 청장은 상대적으로 젊고 개혁적 성향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책·기획역량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경찰 현안인 수사권 조정과 집회시위 문화의 제도적 개선 문제 해결에 적임자라는 것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감안할 때 도덕성면에서 주변관리가 깨끗해 흠결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지냈다는 것도 청와대와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이택순 경기청장이 경찰청장 후보자로 내정됨에 따라 곧바로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 청문절차를 거친뒤 빠르면 이달말께 정식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차기 경찰청장이 정식 임명되면 현재 공석중인 서울경찰청장과 경기경찰청장 등 치안정감급 전보·승진 인사를 시작으로 치안감, 경무관급 등 경찰 수뇌부 인사가 잇따를 전망이다.

議決된 案件 執行部에 勸告키로

- 2005년 제 2차 기획조정위원회 개최 -

재향경우회는 지난 12월 14일 오전 11시 중앙회 사랑방에서 구홍일 경우회장, 이규식 기획조정위원장, 이용상 조직발전위원장, 박희원 사업복지위원장, 각 분과별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제2차 기획조정위원회를 갖고 위원회 출범이후 분과별로 토론해 왔던 안건들에 대한 결론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의견교환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구홍일 경우회장은 『基本이 바로서야 正道를 걸을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는 만큼 기본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하는 한편 『최근 서울시내의 권역별 봉사활동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우들의 사회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과, 내년도부터는 봉사활동의 실적을 평가해서 예산을 차등지원함으로서 조직 발전을 이끌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아울러 구 회장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시·도회 및 지역회 회장들은 물론 현직 지휘관들과 경찰발전 및 경우회 활성화에 대한 많은 대화를 나눈 결과, 이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면서 『이제부터는 조직적인 활성화를 위해 기획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규식 위원장도 『내실있는 활동으로 국민과 현직, 그리고 경우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조직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위원회는 조직발전위원회 관련 업무로 조직 활성화 방안을 비롯한 11개 사항을, 안보치안위원회 관련 업무로 안보치안협력 단체로서의 역할 제고 방안 등 5개 사항을, 사업복지위원회 업무로 경우회관 확보 방안, 기흥골프장 공동경영 전략 개발 등 5개항을, 법규정비위원회 업무로 각 위원회별 검토사항 등 경우회 운영 관련 각종 법규정비에 관한 사안들에 대한 종합토론 및 의결을 가졌고, 의결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중앙회 집행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경찰수사권은 국민 인권의 원상회복

〈1면에 이어〉

취조(조사)를 하면서 가족과 사업체에 대한 협박이나 "이것만 자백하면 무엇·무엇은 빼주겠다"는 식의 흥정, 과거의 위신이나 체면을 엉망으로 비하시키는 모욕·멸시·욕설, 장시간 휴면 방해 등등 그 방법은 일일이 열거할수 없을 만큼 많다.

최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고 자살한 고위공직자, 기업체 대표 등이 많았다. 그들이 비록 육체적 고문은 받지 않았을 지라도, 정신적 고통은 죽음을 택할 수 밖에 없을 만큼 컸다고 할 수 있다. 어떻든 스스로 목숨을 버린 자살로 치닫지 않도록 검찰의 조사방법은 크게 개혁되어야 한다.

19년전에 필자가 존경하는 한 경무관이 어떤 사건의 지휘 책임 때문에 2~3일간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나와서, 당시의 심경을 토로하였는데 근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의 말씀이 필자의 가슴에 저려옴을 느낀다. 수모스러운 취조를 받고 있는데 바로 그순간 고층건물의 취조실 창밖에 한 청소부가 줄을 타고 내려와 유리창을 닦고 있더라는 것이다. 고층건물의 외벽에 줄을 타고 유리창 청소를 하는 위험한 직업이야 말로 3D 직업으로서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직업이다. 그런데 그 경무관의 마음에는 취조받는 자기가 지금 지옥에 있고, 고층건물 창밖에 줄을 타고 있는 청소부는 지금 천국(천당)에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그 행복한 천국의 모습이 부럽더라는 것이다. 지옥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체험한 것이다.

조사받는 처지가 인격멸시의 지옥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취조방법도 개선되어야 한다. "변하지 않는 권력과 변하지 않는 검찰"(2000. 1. 19. 문화일보 시론)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검찰은 수사권을 독점적으로 장악하려 하는 손을 이제 펴야 한다.

3. 수사구조 개혁은 국민을 위해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Acton경) 이 세상에 선한 권력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권력, 특히 독점적 권력은 견제가 없는 한 남용하고 부패·타락하게 된다. 견제와 균형은 권력의 필수적인 안전장치이다. 3권분립(권력분립)이 민주주의 기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정으로 국민 인권을 생각한다면, 수사권(경찰)·기소권(검찰)·재판권(법원) 역시 분권화 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법체제의 분권화 없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검찰이 독점하려 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장과 사법서비스에 배치되는 이권(利權)의 욕심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독점적 사법체제는 영·미국, 독일·프랑스·일본 등의 제도에는 그 유례가 없다.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은 압도적이다. 05. 6. 15 한나라당의 자체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2,472명중 69%가 지지하였고, 05. 8. 19 월드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1,000명중 79.4%가 경찰수사권을 지지하였다. 정부여당도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기 위한 형소법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검찰은, 수사구조 개혁이야 말로 돌이킬수 없는 당위이며, 대세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민권을 위한 기본권의 원상회복이다. 수사권을 더 이상 이권적 차원에서 독점하려고 집착해서는 안된다.

4. 경찰수사체제의 획기적 혁신

한편 경찰수사체제와 방법도 이대로는 안된다.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과 책임에 상응한 일대 혁신을 계획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지면관계로 그 모든 것을 여기에 열거할 수는 없고 몇가지만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21세기 초고속 정보화 시대에 부응할수 있는 과학수사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원초적이면서 중요한 것은, 역시 수사두뇌(인력)·장비·정보자료 관리 D/B등이 혁신되어야 한다.

둘째, 수사과정의 공정성·투명성·청렴성·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예컨대 수사(취조)과정의 녹화검증, 수사상황의 실시간 통지 및 열람, 서면수사 지휘제도, 이의 사건의 검증, 청렴성에 대한 객관적·정기적인 진단평가등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권존중과 피해자보호 및 수사의 서비스화를 수사경찰의 최고의 가치로 제고시켜야 한다. 인권위원회 설치, 인권규칙의 시행, 조사실 환경개선, 불구속수사 원칙 피해회복과 보상의 실질화 등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과거 검찰이 수사권를 독점하고 있을때와 비교해서 경찰의 독자적 수사가 국민측에서 볼 때 인권과 청렴성 및 편의성과 수사 서비스면에서 획기적으로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게 되어야 한다.

이륜차 선진운행문화 조기정착 심포지엄

- 도로교통안전공단 주관 -

도로교통안전공단(이사장 이대길)이 주관하고 경찰청, 한국이륜차문화포럼이 후원하는 '이륜차 사고특성 및 대책에 관한 심포지엄'이 삼성화재 3층 국제회의장에서 주승용 국회의원(열린우리당)과 경찰청 박종국 과장 등 이륜차 관련기관 및 시민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륜차 선진안전운행을 확산시켜 이륜차 사고시 치사율을 줄이고, 이륜차 선진교통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실무부처 관계자들의 주제발표와 산업계 및 이륜차운전자들의 지정토론 및 방청객들의 질의 응답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자리에서 이륜차사고특성 및 대책을 발표한 교통과학연구원 채범석 책임연구원(박사)은 이륜차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안전교육제도, 검사관리제도, 보험제도, 면허제도, 등록제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제도별 소관부처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李相斗의 교통상식-〈42〉

서울 미아리에서 중소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전모씨(45)는 최근 사업상 부산을 급히 다녀올 일이 있어 비행기를 타기 위해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항으로 가던 길이었다. 전씨는 다소 속력을 내 커브길을 돌다가 앞서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추돌하고 말았다. 전씨는 비행기시간이 촉박해 피해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후송한 뒤 마침 승용차를 공항에서 집으로 몰고 가려 함께 타고 있던 부인에게 사고처리를 부탁 하고 공항으로 향했다. 그런데 문제는 더욱 악화됐다.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경찰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들은 전씨가 없어졌다며 뺑소니라고 몰아치는 것이 아닌가. 결국 전씨 부인이 피해자와 함께 동행, 사고조사를 받게 됐다. 조사경찰관은 전씨가 병원으로 환자조치한 후 공항으로 간 사연을 상세히 듣고는 공항에 전화를 걸어 비행기 탑승여부를 확인하고 말을 이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환자를 병원으로 후송조치한 뒤 동승한 부인에게 사고처리를 위임하고 공항으로 간 게 사실이므로 도주의사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번 사고는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또 전씨의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일반사고로 처리된다는 게 아닌가. 전씨부인은 피해자들의 뺑소니 주장에 몹시 걱정했으나 경찰관의 설명을 듣고 겨우 뛰는 가슴을 진정한 뒤에야 경찰서를 나설 수 있었다.

부상자 후송후 긴급 용무로 동승자에게 위임사고 처리한 경우 뺑소니 해당 안돼

김재원 의원 刑訴法 개정안 주요 골자

- ㅇ 檢事가 수사의 주재자임을 명시(195조)
- ㅇ 경위 - 치안총감(경찰청장)까지의 모든 경찰공무원을 사법경찰관 으로 지정(196조 ①항, 현행은 경무관까지)하고, 搜査開始 및 진행해야 하는 의무주체로 명시
- ㅇ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도록 함. 다만, 교통사고, 폭행, 상해, 절도 등 민생치안 범죄의 수사는 검사의 별도 지휘가 없으면 경찰 독자 搜査開始할 수 있도록 함(196조 ②항, 이 경우에도 검사가 사건의 송치를 명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ㅇ 이외에도 경찰에 범죄발생보고 및 정보보고의무 부과, 검사가 직접 경찰징계위원회에 경찰관 징계요구권·경찰 수사사무 지도점검권 부여 등

〈외국사례와 각 조정案 비교〉

	"독자적" 수사권				기소권
	수사개시권	수사진행권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	
영국, 미국	경찰 (미국검찰 : 예외적 개시)	경찰 (미국검찰 : 예외적 진행)	경찰 (미국검찰 : 예외적 청구)	경찰 (미국검찰 : 예외적 종결)	검찰
일 본	경찰 (검찰 : 예외적 개시)	경찰 (검찰 : 예외적 진행)	경찰/검찰	검사 (경미사건 경찰 종결)	검찰
홍미영案 이인기案	경찰/검찰	경찰/검찰	검찰	검찰	검찰
여당案	중요 : 경찰 비중요 : 경찰/검찰	중요 : 경찰 비중요 : 경찰/검찰	검찰	검찰	검찰
현 행 법	검찰	검찰	검찰	검찰	검찰
김재원案※	검찰	검찰	검찰	검찰	검찰

※김재원案은 문언상 일부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경찰의 독자성을 일견 인정하고 있는 듯하나, 여전히 검사가 지휘하면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하므로 언어유희에 불과하며 경찰의 독자적인 권한은 전혀 존재하지 않음. 오히려 범죄발생보고·범죄정보보고·징계의결요구권 등 도입을 통해 검찰 권한의 비대화를 현행보다 대폭 심화

각국의 수사구조 개관

국가명	경찰의 수사주체성	경·검 관계
영국	-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주체 - 경찰이 모든 범죄에 대한 독자적 개시, 진행, 종결권 행사	- 과거 경찰이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권을 독점하였으나, 분권의 필요에 따라 검찰(국립기소청)을 1985년에 창설, 공소유지권을 전담시킴 - 경찰과 검찰은 형사사건의 기소와 관련해서 상호 협의하고 조언, 자문하는 대등협력관계
미국	-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주체 - 경찰이 모든 범죄에 대한 독자적 개시, 진행, 종결권 행사	- 전통적인 권력분립사상에 따라 수사는 경찰에, 소추는 검찰에 배분함이 기본원칙. 다만, 일부 주에서는 조직·경제·공직범죄 등 예외적인 특수범죄를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기도 함 - 경찰과 검찰은 형사사건의 기소와 관련해서 상호 협의하고 조언, 자문하는 대등협력관계
일본	- 경찰이 1차적·본래적 주체〈형소법 제189조 제2항〉 - 경찰이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독자적 개시, 진행권 행사(예외적으로 종결권도 일부 행사)	- 경찰은 1차적 본래적 수사주체, 검찰은 2차적·보충적 수사권자 및 소추권자 - 경찰과 검찰은 형사사건의 수사와 기소와 관련해서 상호 협의하고 조언, 자문하는 대등협력관계〈형소법 제192조〉 - 다만, 검사는 수사의 효율화, 적정한 공소제기를 위해 일정한 범위내에서 경찰에 대해 기능적 상호협력적 개념인 지시, 지휘권을 보유〈형소법 제193조〉
독일	- 경찰은 독자적으로도 일반적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형소법 제163조 제1항〉 - 경찰이 모든 범죄에 대해 독자적으로도 개시, 진행권 행사 가능	-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로서, 사법경찰에 대해 위임과 촉탁을 발할 수 있고, 사법경찰은 이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형소법 제161조〉 - 다만, 검사 소속하에 따라 수사관을 별도로 두지 않고 반드시 경찰관을 활용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수평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권력독점과 남용을 억제하고 있음. 이 때문에 검사는 '손발없는 머리'로 일컬어짐(김종구, 형사사법개혁론, 법문사, 2004, 344면)
프랑스	- 경찰은 독자적으로도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형소법 제14조〉 - 경찰이 모든 범죄에 대해 독자적으로도 개시, 진행권 행사 가능	- 프랑스 형사사법체제의 특징은, 검찰이 법원에 소속되어 있고, 수사판사가 수사를 주도한다는 점임 - 경찰은 주체적 수사실행권 보유, 수사판사는 중죄수사 및 강제수사권자, 검사는 일부 경죄의 임의수사 및 소추권자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기능분립 원칙'을 엄격히 준수, 권한독점과 남용 억제 - 사법경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수사판사 또는 검사의 지시를 준수해야 함〈형소법 제12조 등〉 - 다만, 검사와 수사판사는 자체 인력이 없어 직접 수사는 하지 않고, 수사실행에 있어 경찰관을 활용하여야 하므로 강한 신뢰관계 및 견제관계 형성